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3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박홍배 • 박 정

손명수・조 국・복기왕

고민정 • 박희승 • 김태년

이병진 • 전진숙 • 김주영

윤건영 · 서영석 · 민형배

박수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·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"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"에서 "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"로 확대하려 는 것임(안 제74조제7항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4조제7항 본문 중 "36주"를 "30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⑥	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⑥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	⑦		
내 또는 <u>36주</u> 이후에 있는 여	<u>30주</u>		
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			
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			
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1일			
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			
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			
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			
을 허용할 수 있다.			
⑧ ~ ⑩ (생 략)	⑧ ~ ⑩ (현행과 같음)		